

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97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5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위촉 대상은 안산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안산에 생활기반을 둔 직장인이나 학생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없고,
-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서 보상에 관한 조항을 개정 및 기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제공(안 제4조제3항)
- 나.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시민에게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 (안 제4조제4항)
- 다.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 위촉 대상 확대(안 제5조제2항)
- 라. 기자증 발급을 통한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(안 제5조제5항)

□ 개정조례안 : 불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7. 4. 3. ~ 2017. 4. 23.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불임3
- 방침결정문 : 불임4

< 불임 1 >

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보상할 수 있다.” 를 “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중 “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” 를 “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시민기자(이하 ‘시민기자’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하며,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

1.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
2. 안산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

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장은 시민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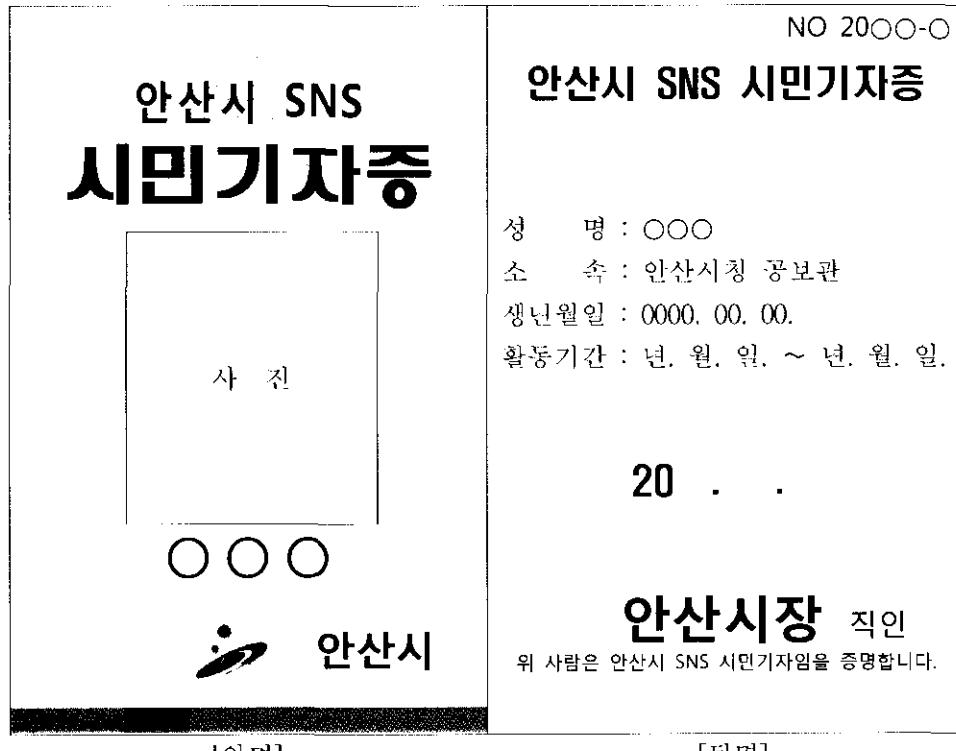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입 안 자	소관 실·과 직위·성명	공보관 정상래
	실·과장 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소셜미디어계장 문선미

[별지 서식]

기자증 발급서식
(제5조제5항 관련)

규격 : 가로 5.4cm, 세로 8.6cm (플라스틱)



[앞면]

[뒷면]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민참여 보장)</p> <p>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. 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시민참여 보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. ④ 시장은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5조(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)</p> <p>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시민기자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)</p> <p>①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(이하 '시민기자'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민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,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2. 안산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시장은 시민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</p>

현 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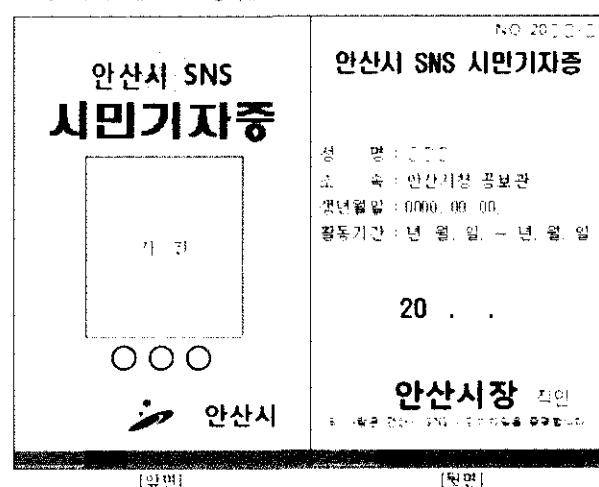
개 정 안

<신설>

[별지 서식]

기자증 발급서식
(제5조제5항 관련)

규격 : 가로 54mm, 세로 86mm (플라스틱)



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978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6. 22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문의 내용 등을 개정하여 용어사용을 보다 명확히 함.

□ 주요골자

- 불분명하여 혼선을 줄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.(안 제4조4항 안 제5조제2항 1~2호, 안 제5조제3항, 안 제5조제5항제5조의2제3항2호,제6항,제7항)

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4항중 “안산시” 를 “ 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 한다.

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안산시” 를 각각 “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시민기자단” 을 “ 시민기자”로 한다.

제5조2의제3항제2호 중 “시의원” 을 “안산시의회의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해촉” 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” 를 “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시민참여 보장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보상</u>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시민참여 보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줄 수 있다.</p> <p>④ 시장은 <u>안산시</u>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필요한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시민참여보장)</p> <p>①~③(원안과 같음)</p> <p>④.....<u>안산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를</p>
<p>제5조(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)</p> <p>①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매체 홍보를 위하여 <u>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시민기자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</u></p> <p>④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5조(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)</p> <p>①<u>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</u>(이하 ‘시민기자’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민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며,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</p> <p>1.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2. 안산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</p> <p>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</p> <p>④(생략)</p> <p>⑤ 시장은 <u>시민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.</u>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</p>	<p>제5조(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민기자)</p> <p>①<u>시에 거주하는 사람</u> <u>시에 있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</u></p> <p>②<u>위촉해제</u>.....</p> <p>④(생략)</p> <p>⑤<u>시민기자의</u></p>
제5조의2(위원회)	제 5 조 의 2 (위 원 회)	제5조의2(위원회)

